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1년 4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-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| 차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|
|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카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| 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라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 파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|
| 마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| 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바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거. 시장감시규정 |
| 사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| 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|
| 아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 더.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|
| 자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| 러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|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
- 다.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
- 라. 신용거래설명서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 (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 추가 등)
-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영업시 준수사항 등)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1/3/18 개정 ·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,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를 추가(제3-6조, 제3-26조, 제3-27조, 제3-28조, 제3-36조, 제4-40조)
 -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
 -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
-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내용 확대(제3-66조)
 - 운용자산규모 2,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
-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(제4-54조)
 -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시 총수익스왑(TRS)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
-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강화(제4-59조)
 - 자전거래시,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
 - 월별 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3-6조, 제3-26조, 제3-27조, 제3-28조, 제3-36조의 개정부분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

-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행위 금지(제4-63조)
 - 운용사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
-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확대(제7-8조)
 - 집합투자기구가 차입을 통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함
-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(제7-41조의6)
 -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서류에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구조의 구조, 투자대상 자산 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
-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 제출시기 완화 등(제8-19조의7, 제8-19조의10, 제8-19조의11)
 -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 협회로 변경하고, 신용평가자료 확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며, 일부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명확화

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2021/3/25 제정 ·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「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의 등록요건(제5조, 제6조)
 -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 · 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등을 규정
- 영업 시 준수사항(제10조부터 제25조)
 -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,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

□ 금융상품 비교공시(제27조)

-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, 공시정보의 범위 및 관련 절차·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(제28조)

-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 후 후속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

□ 청약의 철회·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(제30조 및 제31조)

-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의 적용범위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요건을 규정

□ 금융상품 판매제한·금지명령에 관한 사항(제33조)

- 금융상품 판매제한·금지명령 전 대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고지,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명령내용 공시 등을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미래 성장형 기업의 신규상장요건 합리화 등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미래 성장형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정비 등)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 등)
- 라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)
- 마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 등)
- 바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지배구조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구체적 명시 등)
- 사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등)
- 아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시장조성자 벌점 및 자격정지 기준 강화 등)
- 자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(상장폐지 제도 절차 개선)
- 차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(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 등)
- 카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대량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·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 등)
- 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 도입 등)
- 파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(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등)
- 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이용자의 등록 해지 및 지위 승계 등)
- 거. 시장감시규정 (회원의 공매도 점검의무 강화 등)
- 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회원의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, 기록·유지 및 보고의무 등)
- 더.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)
- 러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 등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성 평가 중심의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을 도입하는 등 진입·퇴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미래 성장형 기업의 신규상장요건 합리화(제29조 제1항)
 -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미래 성장형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(시가총액 1조원 이상)을 신설
 - 미래 성장성과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춘 성장형 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상장요건을 완화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(기존) 시가총액 6천억원 및 자기자본 2천억원
- (개정) 시가총액 5천억원 및 자기자본 1천5백억원

□ 미래 성장형 기업의 매출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(제47조 제1항)

- 미래 성장형 기업의 특성 및 진입요건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출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

□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개선(제25조 제5항)

-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른 상장유지 결정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 마련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심사 질적심사기준 등 진입 · 퇴출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증권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미래 성장형 기업의 분기별 매출액 미달 관련 실질심사 유예(제50조 제1항)

- 미래 성장형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

□ 미래 성장형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정비(별표 2의2)

- 매출이나 이익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시가총액 단독요건 상장기업에 대한 영업 안정성 및 재무 안정성 심사기준 정비
 - (영업 안정성) 매출액 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 관련 기준의 적용 제외 및 예상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 개선가능성 심사
 - (재무 안정성) 총현금흐름(영업 · 재무 · 투자활동)을 기준으로 유동성 심사

□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마련(제19조 제6항)

-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세칙으로 위임

- 감사인 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이의신청시 개선기간 부여 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유지 결정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생략

□ 기타 조문 정비(제90조 제1호)

-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또는 이익금의 분배 등 신고의무의 내용을 명확화

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1/3/8 개정·2021/3/15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,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(제18조)

- 주식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를 공매도호가로 제출하는 경우와 ETF·ETN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에서 배제

□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(제2조)

-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
-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

□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(ETF)·상장지수증권(ETN)·주식워런트증권(ELW) 유동성공급호가를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유동성 공급계좌를 통해 제출하도록 함(제20조의5)

- 유동성공급계좌 신고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위임

□ 기타 조문정비(제17조)

-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(2021. 4. 6 시행)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 변경

1) 제1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,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라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3/12 개정 · 2021/3/1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률) 예외 대상 축소 및 자기·위탁매매 구분기준을 변경한 업무규정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강화(제31조의13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)

- 시장조성자의 결격 요건 중 회원제자금 기준을 (기존) 5천만원 이상에서 (개정)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
- 차입증권이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 호가가 제출되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의무화하고, 시장조성 담당 임·직원을 2인 이상 지정하도록 함

□ 불성실한 시장조성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(별표 2의4)

- 벌점단위를 1점으로 조정하고, 의무불이행기간이 장기일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벌점기준을 강화

종목별 의무불이행 일수	기 존	개 정
5일 미만	1 점	1 점
5일 이상 ~ 10일 미만	1.5 점	2 점
10일 이상 ~ 20일 미만	2 점	3 점
20일 이상 ~ 30일 미만		4 점
30일 이상		5 점

- 낮은 누적벌점에도 자격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기준인 연간 누적벌점의 산정 방식을 개선

시장조성 종목수	기 존	개 정
50 미만	100 점	50 점
50 이상 ~ 100 미만		100 점
100 이상 ~ 200 미만	종목수 × 2 점	종목수 × 1.5 점
200 이상	종목수 × 2.5 점	종목수 × 2 점

주: 종목수는 평가분기말기준 시장조성계약중인 시장조성 종목수를 기준으로 함

□ 일정한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(제31조의16 및 별표 2의4)

- 2분기 연속으로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종목(일평균 회전율 15% 이상)은 다음 분기부터 해당 연도의 시장조성계약 종료

□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기준 조정 및 유동성평가 대상기간 합리화(별표 2의2)

-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를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종목을 배제
- 시장조성기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을 변경
 - (기존) 전년도 7월 ~ 해당연도 6월 → (개정) 전년도 10월 ~ 해당연도 9월

□ 시장조성 관련 정보제공 확대 근거 마련 등(별지 제2호의6 서식)

- 시장조성자의 거래 및 의무이행실적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근거를 시장조성계약서에 마련
 -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 및 공매도 규모, 개별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실적 등
- 표준계약서상 코스닥시장 관련 조문 삭제 등 조문 정비

□ 호가입력사항에 자기·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(제12조)

- 다른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대량·바스켓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호가입력사항 변경
 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

□ 예외적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시 제출가능한 호가 정비(제24조의3)

- 한시적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일부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호가를 반영
 - 주식 시장조성호가, 주식·ETF·ETN·ELW 유동성공급호가

□ 지수차익거래 관련 조문 정비(제25조의2)

-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예외 대상에 지수차익거래를 제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지수차익거래의 유형을 규정

□ ETF·ETN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(제27조 및 제27조의2)

- ETF·ETN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
 - ETF·ETN 차익거래의 세부 유형 규정

마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폐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장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,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(제40조 제2항)
 -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 - (기존) 7일 → (개정) 15일
-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개선(제40조 제6항)
 -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· 의결 생략 근거 마련
 - 이의신청 사유 및 개선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

바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법령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, 지배구조 관련 관리종목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
 - 기존에는 대체로 정기주총 개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상법 시행령(제31조 제4항) 개정으로 정기주총 1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상장폐지 절차 개선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사외이사 ·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구체적 명시(제26조)
 - 주주총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장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

-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(제33조의2, 제33조의4, 제33조의5)
 - 이의신청 기한 및 개선 이행내역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
 - 위원회 심의기한은 (기존) 15일 → (개정) 20일로 확대
 - 소송판결 등 중대 사실 예정시 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도 (기존) 15일 → (개정) 20일로 확대
- 기업심사위원회 생략 관련 세부절차 등 정비(제33조의4)
 -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의 경우,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· 의결 생략 가능
 - 기업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,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 부여
 -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

사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(2021/3/8 개정 · 2021/3/15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,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(제9조의3 제2항)
 -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및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와 ETF차익거래 및 ETN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거래에서 제외
-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(제2조 제10항)
 -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
 -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

아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3/12 개정 · 2021/3/1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및 자기 · 위탁매매 구분기준 등을 변경한 업무규정 개정사항(2021. 3. 8)을 반영하기 위함

2) 제9조의2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(제12조의11 및 업무서식 제6의5)

- 시장조성업무 수행 관련 1천만원 이상 거래소 제재금을 부과 받은 경우 1년간 자격 정지하도록 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
- 상장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만 공매도 호가가 제출되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의무화하고 시장 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도록 함

□ 시장조성자 벌점 및 자격정지 기준 강화(별표 5의3 제3항)

- 의무 불이행 일수에 따른 벌점을 세분화하고, 자격정지 기준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자격정지 기준 강화

□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 제도 도입(제12조의14 제6항 및 별표 5의3 및 업무서식 6의5)

- 매분기말 일평균 회전율을 산출하여 2분기 연속 15%를 초과하는 종목은 해당 분기 말일에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
 - 2021년은 시장조성계약이 2분기부터 개시되므로 2분기와 3분기 회전율을 산출하여 3분기말부터 적용

□ 시장조성 대상종목 및 유동성평가 대상기간 조정(별표 5)

-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
-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을 최대한 시장조성 대상기간에 근접하도록 대상기간 변경
 - (기존) 전년도 7월 ~ 해당연도 6월 → (개정) 전년도 10월 ~ 해당연도 9월

□ 시장조성 관련 정보제공 확대 근거 마련(업무서식 6의5)

- 시장조성자의 거래규모 및 의무이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근거를 시장조성계약표준계약서에 마련

□ 시장조성표준계약서 내용 정비 등(업무서식 6의5)

-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 내용(회원제자금 1천만원 이상)과 시장조성자 관리 강화 관련 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

□ 대량·바스켓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·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(제7조)

- 타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대량·바스켓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입력이 가능하도록 호가 입력사항 변경
 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

□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반영(제8조의5)

-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호가를 세칙에 반영

□ 지수차익거래 관련 조문 정비 등(제8조의6)

- 규정에서 삭제된 섹터지수차익거래 정의를 세칙에서 명시

□ ETF · ETN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(제9조의2)

- ETF · ETN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

자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폐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장폐지 제도 절차 개선(제30조 제2항, 제6항)

-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
 - (기존) 7일 → (개정) 15일
-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근거 마련

3) 관련 규정 개정

□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-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(제25조, 제27조 제3항 · 제6항 · 제7항)
 - 상장법인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제출 기한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확대
 - 위원회 개최기한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
- 위원회 생략 관련 세부절차 등 정비(제24조, 제27조 제10항)
 -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

차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(2021/3/8 개정 · 2021/3/15 시행)³⁾ 개정 이유

-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,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1) 주요 내용

-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(제12조 제2항)
 - 유동성공급 및 ETF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거래에서 제외
-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(제2조 제7항 · 제8항)
 -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
 -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

카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3/12 개정 · 2021/3/1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및 자기 · 위탁매매 구분기준 등을 변경한 업무규정 개정(2021. 3. 8)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대량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 ·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(제7조)
 - 타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 받아 대량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호가입력사항 변경
 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
-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반영(제14조)
 -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유동성공급자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호가를 세칙에 반영

3) 제1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

□ ETF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(제15조)

- ETF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나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(업틱룰)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

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3/9 개정 · 2021/3/15 시행)⁴⁾

1) 개정 이유

-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(유렉스 연계거래)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수단 제공 및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
- 시장조성자 자격강화 및 시장조성 상품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시장조성제도를 정비하고,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 및 위험회피 목적 호가 제출 방법을 명시하여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

2) 주요 내용

-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(유렉스 연계거래) 도입(제72조의9, 제72조의13, 제132조)
 -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상상품 추가, 유렉스청산기관 계좌개설 회원의 의무 등 관련규정 정비
 - 거래소와 유렉스 간의 추가상장 계약에 따라 유렉스 연계거래 상품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선물에 대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가 도입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을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상품으로 추가
 - 유렉스 시장에서 체결된 코스피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(1일물)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 방식으로 유렉스 시장의 미결제약정을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
 - 유렉스청산기관 계좌개설 회원이 장개시전협의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 해소의무 대상에 코스피200선물을 추가
 - 유렉스청산기관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코스피200선물 추가
- 시장조성 대상상품 선정 및 종료기준 마련(제81조 제1항, 제4항)
 - 시장조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조성상품 선정
 -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의 지속 여부 점검

4) 제72조의9, 제72조의13 및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

□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강화 (제80조 제1항)

- 시장조성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, 영업정지,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 1천만원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1년간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
- 시장조성자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

□ 시장조성자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 제출 방법 명시(제83조 제4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)

- 시장조성호가 체결 후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의무 명시
 - 시장조성호가 체결된 이후 지체 없이 위험회피 목적 호가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위험회피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
- 시장조성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시 공매도 제한
 - 위험회피거래를 위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일일 면세한도 수량 및 사전 신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
 - 시장조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상품(미니코스피200선물 · 옵션)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 차입공매도 호가제출 금지

파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(2021/3/8 제정 · 2021/4/1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, 이용자, 거래정보의 보고 · 보관 · 제공 · 공시 등 거래정보저장소(TR)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정의 및 휴업일(제2조, 제3조)
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(TR)로 선정된 한국거래소를 'KRX-TR'로 정의하고, 거래정보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대상거래, 거래일, LEI, UTI, UPI 등에 대해 정의
- 정기 휴업일을 규정하고,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□ 이용자의 구분 및 등록 · 해지(제4조부터 제8조까지)

- 이용자를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보고의무기관, 보고대행기관 및 정보이용기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
- 이용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절차와 합병 · 영업양도 시 이용자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

□ 이용자의 의무(제9조부터 제13조까지)

- 이용자로 하여금 법규준수, 비밀유지 및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인가취소 등 사유 발생시 KRX-TR에 통지할 의무 및 KRX-TR의 추가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도 부여

□ 보고대상거래 등(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

- 보고의무기관의 유형별 보고대상거래를 규정하되 동일 법인 내 거래의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

□ 보고항목 등(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

- 거래정보를 매매 · 가치평가 · 담보 · 기타정보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부 보고항목 등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
- 보고의무기관에 국제기준에 따른 식별기호(LEI, UTI, UPI) 사용의무를 부여

□ 거래정보 보고업무의 개시(제20조, 제21조)

- TR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자의 이용자등록 신청기한 및 보고업무 개시기한을 규정
- 신청기한 미준수 등에 관하여 KRX-TR이 금융감독원과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

□ 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(제22조부터 제30조까지)

- 보고의무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정보유형별로 KRX-TR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, 거래정보의 보고 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정보의 이용 ·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
- 거래정보의 보고시한을 정하고 전산장애 발생시 보고시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, 전산장애 및 시스템 관리상 필요에 따라 거래정보의 검증 등을 임시로 중단 가능하도록 규정
- 보고의무기관이 매매정보 변경시 계약변경을 합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고, 가치평가 · 담보정보의 경우 거래종료일까지 매 영업일마다 갱신 보고하도록 규정
- 보고시한 내에 청산된 거래의 경우 보고한 것으로 간주

□ 보고업무의 위탁 등(제31조)

- 보고의무기관이 거래정보 보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및 보고대행기관의 위탁범위 변경 ·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

□ 거래정보의 검증 · 기록(제32조, 제33조)

-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의 형식 등을 검증하고, 검증을 통과한 거래정보는 시스템에 기록 후 품질관리 프로세스(연결 · 대사)를 진행하되,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정보는 미보고로 간주

□ 거래정보의 품질관리 등(제34조, 제35조)

- 검증을 통과한 거래정보에 대하여 연결 프로세스(거래당사자 양쪽이 보고한 거래정보를 하나의 거래로 인식)와 대
사 프로세스(거래정보 중 주요 보고항목을 대조하여 연결된 거래정보의 일치 여부 판단)를 진행
- 대사 결과 불일치 보고항목은 보고의무기관이 수정 보고하도록 규정

□ 거래정보의 보관(제36조)

- KRX-TR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

□ 거래정보의 제공 · 공시(제37조, 제38조)

- KRX-TR의 금융위 등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, 정보제공대상기관의 유형별로 제공방법을 달리 규
정(금융위, 금감원, 한국은행에 대하여만 거래정보에 대한 직접 접속 권한 부여)
- KRX-TR로 하여금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잔액 등의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
시하도록 규정

□ 부당한 차별 금지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의 통보 의무(제39조, 제40조)

- KRX-TR에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의무를 부여
- 이용자 및 그 임직원이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 및 보고시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
통보하도록 규정

□ 통지의무(제41조)

- KRX-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,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
하도록 위임

□ 운영위험 및 이해상충 관리(제42조, 제43조)

- KRX-TR에 대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된 운영위험의 관리 및 이해상충의 파악 · 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

□ 거래정보의 보안 및 비밀정보 보호 등(제44조부터 제47조까지)

- 거래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, KRX-TR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거
래정보 오 ·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

□ 비상계획 및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(제48조, 제49조)

- 업무수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·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
- G20 합의에 따른 TR 도입 취지에 맞게 해외 TR과의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연계 근거를 마련

□ TR운영위원회, 이용료 납부 및 부수업무(제50조부터 52조까지)

- 업무개선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TR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이용료 부과 근거, 이용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KRX-TR이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거래확인업무 등으로 정하고 관련 이용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

□ KRX-TR의 책임 제한(제53조)

- KRX-TR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고, KRX-TR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시스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책임도 면제하도록 규정

□ 표준시, 준거법·재판관할(제54조, 제55조)

- 업무규정에서 적용하는 날짜·시간 등에 관한 기준으로 대한민국 표준시를 적용
- 업무규정과 관련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, 부산지방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규정

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3/9 제정·2021/4/1 시행)⁵⁾

1) 제정 이유

- 「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」 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이용자의 등록·등록변경(제3조, 제4조)

- 이용자의 등록 및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(별지 제1호 및 제2호)을 정의하고, 이용자의 등록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

□ 이용자ID의 복수발급(제5조)

- 하나의 LEI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ID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

□ 이용자의 등록 해지 및 지위 승계(제6조, 제7조)

- 이용자의 등록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(별지 제1호 및 제2호) 및 이용자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(별지 제3호)을 정의

5) 제12조 제1항은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KRX-TR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□ 보고대상거래(제8조, 제9조)

- 공동명의로 보고대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자를 규정하고,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대상거래에 대한 보고기준을 규정

□ 보고항목 등(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
- 구체적인 거래정보유형별 보고항목과 그 형식 및 요건을 별표 1에서 규정
- LEI 외의 거래상대방 식별기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, 식별기호별 사용기준에 관하여 규정
- UTI의 형식 요건을 정의하고, UTI 발급기관 결정 등에 대한 기준(별표 2)을 규정

□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방법(제13조)

- 보고의무발생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

□ 거래정보의 보고(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

-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TR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, sFTP, API 등으로 지정하고, 금융거래정보이용·제공 동의서 양식(별지 제4호)을 정의
- 거래종료일의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갱신 보고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

□ 보고업무의 위탁 등(제17조, 제18조)

- 보고대행기관 지정·변경·지정해제신청서(별지 제5호)를 정의하고, 보고대행기관 관련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

□ 검증, 품질관리 처리시간(제19조, 제21조)

-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에 대한 검증 및 연결·대사 프로세스의 처리시간과 그 결과의 통지시한에 관하여 규정

□ 다중보고의 기록(제20조)

- 동일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 규정

□ 제공 보고서 및 공시주기·기준(제22조부터 제24조까지)

- 정보제공대상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별표 3에서 규정
- 통계정보의 공시주기를 1주로 정하고, 잔존만기와 결제통화를 집계기준으로 규정

□ 통지사항 등(제25조)

- KRX-TR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사항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

□ 비밀유지서약서(제26조)

- KRX-TR의 담당 임직원이 KRX-TR에 제출해야 하는 비밀유지서약서(별지 제6호)를 정의

□ TR운영위원회 및 지연이자율(제27조, 제28조)

- TR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「TR운영위원회 운영세칙」에서 정하도록 위임
-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의

거. 시장감시규정(2021/3/8 개정 · 2021/3/15 시행)⁶⁾

1) 개정 이유

-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엄격한 공매도 관리를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879호, 2021. 1. 5, 일부개정)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회원의 공매도 점검의무 강화(제19조의2)

- 회원은 다음 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· 유지하여야 함
 -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 제18조의2 제1항,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」 제9조의4 제1항 또는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
 - 장중에 먼저 매도하고 당일 중 재매수하여 공매도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

□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마련(제19조의3)

-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차입계약서, 증권보유잔고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회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
 -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· 범위, 제출시한 및 방법 등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

□ 회원 및 그 임원 · 직원의 징계등의 사유(제21조 제1호)

- 회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확인 · 기록 · 유지 ·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신설

6) 제19조의3조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

□ 회원의 공매도 점검 결과 보고 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(제29조 제3의2호)

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1/3/12 개정 · 2021/3/15 시행)⁷⁾

1) 개정 이유

□ 회원에게 공매도 확인, 기록·유지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, 시장감시위원회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공매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회원의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, 기록·유지 및 보고의무(제13조의2)

- 회원이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거래로 ‘차입공매도 호가 표시 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’를 규정
- 회원에게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, 전월의 점검결과를 매월 10매매거래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

□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(제13조의3)

-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에게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위탁자 정보, 매매거래정보, 대차거래정보, 증권보유잔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회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

더.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2021/3/8 개정 · 2021/3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(제13조, 제14조 1항, 제15조)

7)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

- 상장법인의 이익신청 기한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제출기한을 (기존) 7일에서 (개정) 15일로 확대
- 위원회 개최기한은 (기존) 15일에서 (개정) 20일로 확대

러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(2021/3/11 제정·2021/3/15 시행)⁸⁾

1) 제정 이유

-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(제4조)

- 매년 10월에 직전 1년간의 거래대금 및 동일유형 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상품을 선정
- 거래소는 선정된 시장조성상품을 각 시장조성자에게 통보

〈 시장조성상품 선정 요건 〉

구분	요건 (①, ②를 모두 충족)
선물	① 거래대금 300조원 미만
	② 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% 미만
옵션	① 거래대금 9조원 미만
	② 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% 미만

주: 신규상장 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함

□ 시장조성자 선정·퇴출 요건(별표 1)

-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시장조성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시장조성자를 선정
 - 시장조성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(파생상품 시장조성담당 본부장보) 및 위원 5인(부서장·팀장)으로 구성
- 기존 시장조성자는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자로 재선정하되,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

□ 시장조성계약 체결·해지에 관한 사항(제7조, 제1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)

-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와 1년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

8) 제16조 2항은 전산개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1 제1호·제2호 단서 및 별표 2 제1호 사목(2)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

- 다만, 시장조성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는 등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

- 시장조성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차입공매도 한도수량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벌점 부과

□ 시장조성계좌 및 주권연계계좌 등 신고방법(제8조)

-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에 시장조성계좌, 주권연계계좌 및 ETF연계계좌를 신고
- 주가지수 파생상품, 주식 파생상품 및 ETF선물의 계좌를 구분 신고
 -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인 지수별로 계좌를 구분

□ 시장조성호가 및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방법(제10조, 제11조 및 별표3)

- 시장조성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, 필요시 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거래와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호가를 매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
- 시장조성거래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 - 미니코스피200 선물·옵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 목적의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
 -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및 그 비중의 변경, 기초자산인 주권의 거래정지 후 재개 등을 차입공매도 한도수량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

□ 시장조성자 평가 및 시장조성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(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별표 4)

-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 명시
 -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
- 시장조성자 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마련

□ 시장조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(제16조)

- 거래소가 시장조성거래와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호가를 매칭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
-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계약 체결한 자에 대한 정보 보관 의무 등)
- 다.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(국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추가 등)
- 라. 신용거래설명서 (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1/3/30 개정 · 2021/4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2020. 12. 29)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펀드가 확대되어 판매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— 조특법 제26조의2, 제27조

- 대차잔고 통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차중개기관 간 중복제출 거래내역 삭제 등 관련 보고서식 개정 필요

2) 주요 내용

- 변경대상 제외 펀드(제40-1조)

—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에 편입된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

- 유가증권 대차거래내역(별지 제34호)

— 유가증권 대차거래내역‘ 체결내역 양식 중 ’대차구분‘ 항목을 삭제

— 체결내역 중 대차구분 삭제 및 보고시간 변경

• (기존) 19:00 → (개정) 17:30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1/3/18 개정 · 2021/4/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2020. 12. 9)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 - 차입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위탁자의 대차거래 정보 보관의무 준수 여부 점검결과를 징구하도록 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(제11조)
 - 차입공매도 주문수탁 증권사가 위탁자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도록 의무화
 - 다만, 위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
 - 위탁자에게 증권을 대여하였거나 대차거래를 중개하여 위탁자의 대차거래 정보를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
-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 결제이행방안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개인투자자를 제외

다.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(2021/3/5 개정 · 2021/3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국고채권 2년물 수익률 신규 공시를 위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1. 2. 25, 시행 2021. 3. 10)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국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추가(제6조 제1항 제1호)
 -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 2년물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'채권 최종호가수익률'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채권 추가

- 회사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대해 본회가 종목군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(제6조 제1항 단서 삭제)
 - 회사채는 발행 업종과 종목이 매우 많고 다양하여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을 특정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지정할 경우 회사채 수익률 공시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
 - 또한, 본회의 종목군 제시는 공정거래법상 ‘사업자단체 금지행위’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 필요
 -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‘가격을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할 가능성(공정거래법 제19조, 제19조 제1항 제1호, 제26조 제1항 제1호)

라. 신용거래설명서 (2021/3/24 개정 · 2021/3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(2021. 3. 25)과 관련하여 금소법상 신설된 제도를 신용거래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
 - 청약철회권(금소법 제46조), 위법계약해지권(금소법 제47조)

2) 주요 내용

- 청약철회권 신설
 -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고객은 계약체결일(또는 계약서류 제공 받은날)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 행사 가능
- 위법계약해지권 신설
 - 회사가 판매규제 위반이 있는 경우,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(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)이내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,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 해지 가능

3) 동일 사항 개정 법률

- 수익증권저축약관 (2021/3/25 개정 · 시행)
 - 제12조, 별첨 1, 제13조, 제25조
-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(2021/3/25 개정 · 시행)
 - 제14조, 별첨 3, 제15조, 제30조

□ 신용거래약관 (2021/3/25 개정 · 시행)

— 제15조, 별첨 13, 제16조, 제19조

□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(2021/3/25 개정 · 시행)

— 제20조, 별첨 1, 제21조, 제25조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